



교육소비자 보호와 사립학교 발전방안

발제

김경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좌교수

토론

김정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일시/장소

2022년 6월 3일(금), 10시,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주최 | 컨슈머워치

<컨슈머워치 세미나>

교육소비자 보호와 사립학교 발전방안

- 일 시: 2022년 6월 3일(금) 오전 10시
- 장 소: 산림비전센터 열림홀
- 주 최: 컨슈머워치

- 사회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발표 : 김경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좌교수
- 토론 : 김정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교육소비자보호 및 사립학교발전방향¹⁾

김경희(명지대 석좌교수)

1. 좌파·진보 진영의 사립학교에 대한 그릇된 인식

(1) 사학 경영자를 부도덕하게 인식해

현 정부는 진보좌파 교육감과 같이 사학경영자를 부도덕한 존재로 본다. 사학의 비리와 분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학혁신방안을 성안하고, 사립학교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공립학교에 준하는 공적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반면에, 사학경영자들은 전 재산을 교육에 바친 사학경영자들은 일부 사학의 비리 문제를 확대하여 모든 사학을 마치 범죄 집단처럼 취급하고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저항한다²⁾. 이처럼 상반된 입장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엇갈린다. 보수성향의 언론은 사학에 대한 옥죄기로 혹평한다. 동아일보는 “사학 옥죄는 정부... 대학들, 손발 다 묶으면 경쟁력 어떻게 키우나”³⁾로 평가가 냉혹하다. 반면에 진보성향의 언론들은 오히려 사학의 공공성 강화에는 부족한 것으로 논평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학혁신’ 고삐 죄었지만 뭔가 부족했다”⁴⁾로 더 강력한 규제책을 주문했다. 이처럼 사학규제에 대하여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집단 간 연합하여 집합적 논쟁의 형태를 띠어 대립적인 담론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내세워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국·공립에 준하여 강화함으로써 사학의 운영의 자율성의 폭을 줄이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학비리 척결과 족벌경영 해소를 들어서 사학의 인사·재정권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제출하였다. 이에 사학과 보수 진영에서는 사

1) 필자의 저서 “4.0시대 교육정책 어젠다”내용을 정리하였다.

2) 중앙일보, “전 재산 교육에 바친 사학운영자, 범죄자 취급해 암울”, 2019.7.20

3) 동아일보, “사학들, 정부 마지막 남은 교사인사권까지 독점하려해”, 2021.8.20

4) 경향신문, “사학혁신 고삐 죄었지만 뭔가 부족했다”, 2019.2.19

립학교의 ‘공영화’ 시도로 간주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립 양상은 2005년에 열린우리당이 추진했던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사학과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상황과 유사하다⁵⁾.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과 손을 잡고 야당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개방이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일방처리했지만, 1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해서 2007년에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함으로써 혼란을 빚은 바 있다. 사학규제의 대표적인 정책은 2019년 12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혁신방안과 2021년8월에 통과시킨 사립학교법 개정이다. 이들 내용은 2005년 사학개혁으로 추진되었으나 당시 야당과 사학의 반대로 담지 못한 과제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사학 측에서 일부 사학의 문제점을 침소봉대하여 사학을 적폐 세력으로 낙인찍어 본격적인 손보기에 나서고 사학의 공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여정부에서 사학법 개정을 사학법인 속에 공공성을 내장하려는 시도로 해석하는 견해⁶⁾가 있지만, 반면에 사학의 자유를 박탈하는 의도로 해석하기도 한다. 제철웅⁶⁾은 당시 열린우리당이 사학비리 척결과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운영의 참여를 통한 민주화를 내세워 추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학교법인의 경영 권한 축소, 학교장의 권한 축소, 교직원 등에게 학교운영 자치 권한 부여로 특징지었다, 이와 같은 개혁안은 세계적인 추세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학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억압하고 사학의 하향 평준화를 고착시켜 교육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2). 공공성을 내세워 규제를 늘려⁷⁾

가. 문재인 정부는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역점과제로 추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사학정책에 관련하여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과 ‘사학비리 척결’을 공약하였다⁸⁾.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5) 문화일보, “14년 만에 다시 불붙은 사학개혁 논란”, 2019.12.24

6) 제철웅,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위한 모색:여당의 사학관련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 제27호(2004), 445-475면.

7) 필자의 학술논문, ‘사학혁신방안 비판적분석’(교육법학연구, 32-1. 2020)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에 마련된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담고 있는 “100대 국정과제”에는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육성·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공영형 사립대**은 이사의 과반수를 공익형 이사로 선임하고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경비 20~25% 지원하는 준공립 대학모델이다.⁹⁾ 사학 측은 재정지원을 빌미로 사립학교 운영권을 정부에서 탈취하는 것으로 사학재산권 침해로 보고 있는 제도이다¹⁰⁾.

문재인 대통령은 사학을 보는 인식도 우호적이고 앓고 사학 부조리 문제에 대하여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2019년 6월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지시한 것이 이를 반영한다¹¹⁾.

2017년 12월 ‘**사학혁신위원회**’를 발족하면서 그 배경을 ‘사학의 위법·불법행위 및 도덕 해이 심각’을 들고 있는 점을 볼 때 현 정부의 사학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김상곤 전 부총리는 사학혁신위 출범식에서 “문재인정부에서는 사학비리근절을 통한 교육민주주의 회복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세부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학비리근절을 강조하였다. 유은혜 부총리도 2020년 신년사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사학혁신 방안,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 방안,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의 10가지 정책은 각별히 챙기겠습니다”라고 천명하였다. 이처럼 사학의 공공성 강화 정책은 현 정부의 역점과제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¹²⁾.

나. 사학혁신방안은 규제 투성이

교육부가 2019.12.18.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하여 정부개입확대를 통해서 규제를 확대하였다. 공공성을 강화 이유를 살펴본다. 첫째, **한국의 사학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한다**¹³⁾ 사립학교 비중

8) 변기용·박준희·장정현, “19대 대선공약 분석과 문재인정부의 고등교육 부문의 주요 개혁과제”, 교육정치학연구, 제24권 제2호(2017), 77-105면.

9) 연합뉴스,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도입효과성 검증 용역 수행”, 2020.2.19

10) 서철원, “정부의 사학재정지원과 사학의 자주성 및 공공성”, 사학정책포럼, 제8호 (2020.2), 1-21면.

11)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 2019.6.20

12) 교육부, 2020 신년사, 2020.1.1

이 높아진 이유는 정부의 학교설립 재원조달 부족을 민간 자본을 통해서 사립 학교로 보충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치 않고 단순히 사립학교가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들어서 공립학교에 준하는 정부 규제를 강조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비중이 작거나 비슷한 수준이고 다만 고등학교가 비중이 높다. 초등학교는 한국이 2%인데 OECD 평균은 15%이어서 오히려 비중이 적고, 중학교는 한국이 18%이고 OECD 평균이 14% 이어서 비슷한 수준이며, 고등학교는 우리나라가 44%로 OECD 평균 19%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처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매우 높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다¹⁴⁾. 사립학교 비중이 높다고 단순히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사학의 비중이 높지만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영국, 벨기에, 일본의 사례를 보아도 정합성이 떨어진다.

둘째,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대부분의 사립중·고는 정부의 재정결함보조에 의해서 운영되는 재정구조의 취약성을 공공성 강화 논리로 제시되고 있다. 사립초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사립 외국어고등학교 등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사립 중·고등학교 재정세입의 대부분을 국고 보조에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평준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립학교의 등록금을 공립학교로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에 따는 재정부족액을 국가에서 보충해주면서 사립의 국고 의존도는 심화되었다. 특히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립고교의 세입구조는 공립고등학교와 유사해지고 있다. 이처럼 사립학교의 재정구조의 정부 의존도 심화는 정부 정책이 따른 결과이므로 국고에 의존하지 않고 재정독립을 원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등록금 책정 등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로 일괄전환이 대표적으로 사학의 재정 독립을 침해하는 정책이다. 42개 자사고와 16개 사립외고는 교육청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수업료와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하여 학교 당 약 40억~60억 원 정도 국민의 세금을 절약해준다. **자사고·외고·국제고 79개가 일반 사립고로 전환하면 5년간 1조 원에서 1조 5천억 원의 국고지원이 필요함**에도 이를 폐지하여서 그동안 학부모와 사학법인이 부담해왔던 것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대납하겠다는 것이다.¹⁵⁾ 또한, **사립대학에 대한 등록금 규제를**

13) 교육부,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교육부 보도자료, 2019.12.18.; 임재홍, 앞의 논문(2019).

14) 서철원, 앞의 논문(2020).

지난 12년간 지속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와 더불어 사립대학의 국가재정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국가 스스로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 의존도를 높이는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정 규모 증가를 공공성 강화 이유로 드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셋째, 사학의 부정과 비리의 원천적인 차단을 이유로 사학에 대한 공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사학비리는 해당 사학에 대한 감독권 강화와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예방하고 재발을 차단하여야 하지, 그것을 사학의 자주성을 억제하는 근거로 활용하면 과잉규제라 할 수 있다. 이는 기본권의 주체가 자신의 기본권을 남용한다고 기본권 자체를 박탈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¹⁵⁾. 일부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사학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통제의 강화로 연결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2. 문재인 정부의 사학 옥죄기 정책

문재인정부에서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강화된 규제를 따져 본다.

첫째, 현재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 기구로 격상시켜**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과 충돌이 예상된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를 개정하여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있다. 학운위의 심의기구화는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구조에서 국·공립과 사립학교의 구별을 없애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해 지역주민이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관여할 수 있다고 보는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그 설립의 주체는 물론 운영의 권리주체가 학교법인이고 운영에 따른 일체의 의무와 책임도 학교법인에 귀속된다. 많은 시도에서 학운위에 정치·노조활동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념이나 이익에 따라 학교 운영이 좌지우지되고 있어 학교장의 자율적 학교운영이 어렵게 되어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심의기구가 될 경우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대학에서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에 사학법인 이사회 권한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5) 김경희,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는 교육의 하향평준화 초래”, 국회보 637호 (2019), 20-21면.

16) 이명웅, “사학 공영화 정책에 관한 입론(立論)의 문제점”. 사학정책포럼, 제8호 (2020).

예·결산, 교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 있는 입법례(고등교육법 제19조의2)를 고려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법인 고유사무까지 심의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와 같은 입법례는 선진국의 사학 전례에도 없는 이사회를 무력화시키는 법률 개정안이다. 학운위의 심의기구화는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사학법 파동 시 법률 개정을 추진하다 무산된 사항이었다.

둘째, **시정요구없이 임원 취소 요건에 배임죄 추가하고 기준을 낮추어 관할청이 쉽게 임원승인취소의 길을 열었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9조의2를 개정하여 △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 취소하도록 하고, △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 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을 수익용 기본재산 30%(고등학교 이하는 50%)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10%(고등학교 이하는 20%)로 낮추었다. 사립학교법에 임원취소 사유로 명기되지 않은 배임죄를 추가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 되고, 1천만 원 이상 횡령을 시정요구 없이 이사 승인 취소 요건으로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의 “ 비리정도가 중대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서 법취지와 합치되지 않는다. 더욱이 배임죄는 처벌범위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학계에서도 폐지논란이 있는 형벌인 것을 감안할 때 시정요구 없이 임원승인취소 요건에 배임죄를 추가하면 관할청의 남용 소지가 크다. 더욱이 법원판결로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 관할청의 감사로도 시정요구없이 임원승인을 취토록 할 수 있어 관할청의 재량권 남용을 막기가 어려워 졌다.

셋째, **사립학교 직원을 반드시 공개채용하고 관할청의 징계요구를 따르도록 강제화하여 사학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70조의3 내지 제70조의7) 친인척의 사립학교 직원으로 채용을 막는 수단으로 공개채용 의무화를 들고 있다. 사무직원도 교원과 같이 채용공고를 통해 공개 채용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였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사무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임면권자의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 사무직원의 공개채용 채용 여부를 포함하여 채용의 형식과 방법, 절차 등은 학교법인의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일본의 사립학교법에서는 교직원의 인사에 관련된 조항이 없다. 이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노동계약에 의해서 체결된 피고용주이기에 일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검사·조사 결과 사무직원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할청 요구대로 사학이 징계하지 않을 경우, 다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청의 말을 듣지 않으면 관선이사를 보낼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까지 갖게 되었다. 관할청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사학의 자유와 권리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해져야 한다. 학교장에 비하여 학교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거의 없는 교직원에 대하여, 그것도 징계 요구의 원인을 불문하고 징계요구에 불응할 경우 무조건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존재 의의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법률 개정안이다. 또한 개정안은 사무직원의 특정한 중요 위반사항이 아닌 모든 위반사항에 관할청이 개입하는 것으로, 사학의 자주성·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넷째, 사학 교원채용에서 1차 필기시험은 교육청에 강제 위탁토록 규정하여 교사채용권까지 빼앗았다.¹⁷⁾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사학, 종교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개정안을 2021년 8월 강행 처리하였다. 교육감이 사학의 교사 채용에 간섭하고 사학 통제가 한층 강화되어 사학의 생명줄인 자율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1970년대 평준화로 학생선발권을 잃은지 오래되었고, 교육과정도 국가가 정한 틀 속에서 짤 수 있으며 재정부용도 국가통제로 재량이 없다.

그동안 유일하게 유지하던 교사 인사권도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빼앗기게 되었다. 교사채용에서 핵심적 과정인 필기시험을 교육청에서 거머 쥐기 때문이다. 필기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 임용고사성적 순서이기에 설립이념인 종교적 믿음이나 교육관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학 측은 사실상 사립학교 교사 채용권을 박탈하려는 첫 단추라고 믿고 있다. 실제로 이 재정 경기교육감은 신규 채용의 전 과정을 위탁하는 학교에만 교원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난 등으로 인건비 지원에 목매는 사립학교를 압박하여 인사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민주당과 전교조·교사노동연맹은 채용비리를 막기위해, 그리고 대부분의 사립

17) 필자의 동아일보 시론(2021.8.26.). 사학 자율성 뺏는 사학법 개정, 교육 부실 부른다

학교 교사의 인건비를 국고에서 부담하기에 교사채용에 교육청이 간섭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극소수 사학의 채용 비리를 내세워 사립학교의 인사권까지 뺏는 것은 권력 남용이다. 중학교 의무교육과 고교 평준화로 등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서 사학의 교육경비를 오래전부터 국가가 담당하였는데, 새삼 이를 이유로 드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국민세금 지원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사립초·자사고·외고·예술고 등 서울에서는 전체 사립학교의 10%가 넘는데 이들 사학도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강제 위탁토록 하고 있어 법개정의 의도가 의심받는 것이다. 그래서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14개를 장악한 親전교조 교육감들이 건학 이념과는 동떨어진 좌편향 교사들을 보내 사학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한다. 좀 더 상세히 개정안이 지니는 문제점을 살펴본다.

다섯째, 2020년 2월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에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일괄 폐지 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서열 해소” 한 마디에 국민적 의견수렴 없이 군사작전과 같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30년 이상 우리 사회 고교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전국의 자사고(42교), 외고(30교), 국제고(8교)는 정권의 적폐세력으로 몰려 일반고로의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 자사고 폐지가 우리 교육에 줄 해악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18)

첫째, 헌법의 ‘교육제도 법정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헌법 제31조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자사고, 외고 등 교육제도의 변경은 시행령 차원의 행정입법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결정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도 “기존 교육제도 변경은 교육 당사자 및 국민의 정당한 신뢰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확인한 바 있다(2018.7.12).

둘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의 2025년 자사고·외고 폐지 발표는 국민적 의견 수렴 없이 대통령 한 마디에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전격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이다. 이는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문제로 불거진 사회적 공분을 자사고·외고·국제고 죽이기로 모면하려는

18) 필자가 초고를 작성한 2020.1.6.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성명서 내용을 보완하였다.

것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갑자기 조국 일가 비리로 인해 입시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되어 억울한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셋째, 학부모·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한다. 평준화 지역에서 예·체능 이외 학과(인문사회계·이공계 등)를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중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영재·과학고뿐이다. 이들 학교의 정원은 전체 학생의 0.05%에 불과하다. 이리 되면 그동안 자사고·외고에 진학하던 4.2%의 학생들은 집 근처에 강제로 배정받는다. 이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교육을 국가 독점으로 생각하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자사고·외고는 국민의 자유와 사회 각 분야의 자율성을 확대해 온 우리 역사의 흐름에 따라 탄생하고 점진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들 학교를 없애고 '배급형' 교육 체제로 회귀하는 것은 역사의 역주행이고 퇴보이고 교육 독재이다.

넷째, 고교 평준화 정책의 획일성과 비효율성의 부작용을 심화시킨다. 자사고·사립외고·국제고는 기존 평준화 정책에서 나타났던 획일성과 비효율성을 보완해 온 것이다. 즉, 학교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교육 수요자인 국민에게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수월성(水越性)을 동시에 추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섯째, 국민 세금을 낭비한다. 현재 42개 자사고와 16개 사립외고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자립으로 운영하여 국민 세금 부담을 줄여 준다. 만약 자사고·외고·국제고 79개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면 전환비용이 연간 2,637억원 소요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연 2만 6천 여 명 학생에게 연간 1,000만원의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규모이다.

여섯째, 서울 강남 등 부유지역 명문학군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어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소위 '학군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특정지역 집값 상승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짐에 따라 우수한 학교가 몰려있는 소위 강남 8학군과 같은 명문학군으로 이주하려는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다.

일곱 번째, 평준화 정책에서 나타나던 학생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평준화지역 학교의 한 교실에는 기초학력과 학업동기가 천차만별인 학생들이 섞여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교사의 수업지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학력저하는 심화될 것이다.

여덟 번째, 보편적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어긋난다. 세계적으로 국가 권력이 자사고·외고 등 독립형 사학의 운영을 통제하고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까지 박탈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없다.

아홉 번째, 전국 단위 학생모집 특례를 없애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일부 자사고와 외고는 전국적으로 학생모집이 이루어져야 건학이념 구현이 가능하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일부 자율학교에 허용된 전국단위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시·도교육청의 관할 범위 내에서 학생모집을 제한하는 것은 설립 당시 정부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열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우수 인재 양성을 저해한다. 세계 여러 나라는 인공지능(AI)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우수 인재 양성에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평균주의에 함몰되어 경쟁을 통한 인재 양성을 소홀히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3. 사학에 자유 주어 경쟁토록 하고, 학부모의 선택지 넓혀 줘야

국제적 평균보다 높은 공적 규제를 받는 우리나라 사학에 대하여 추가적인 규제는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 관할청의 임원승인 취소·교비회계와 법인회계 구분 등 한국의 사학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큰 공적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인사권과 재정 운용에서 공적 규제를 강화하는 사학혁신방안과 사립학교법개정은 사학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교육혁신의 단초를 찾고자 하는 선진국의 노력과 정반대이다. 사립학교가 국공립과 다른 자율과 위험부담을 통해서 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양성과 지식창출을 선도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도 배치된다. 사학 부조리 척결에 몰두하여 우리 교육을 지탱하고 있는 건전 사학을 육성하는 정책을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다. 국제규범을 고려하고 시대 변화에 맞추어 사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학생수 절벽에 대한 대책으로 사립학교의 해산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에서 지난 30년간 출산율 감소폭이 0.48명으로 제일 크고, 합계출산율도 1미만(0.84)인 유일한 나라이다. 연간 태어나는 아동 수도 1970년대 100만명에서 2021년에는 26만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10년 뒤에는 학생이 지금보다 25% 더 준다. 학령아동 절벽으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미달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2021년 전국 대학 신입생 미충원 규모는 4만 여명이고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지속 확대되어 미충원 인원이 10만명에 이를 것이다. 그동안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폐교대학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원을 담고 있는 법안들이 18대국회에서부터 20대국회까지 11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교대학의 잔여재산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국회의원들 간의 대립으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립대학이 학생부족과 재정난으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 경우에 잔여재산은 설립자 또는 정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토록 한다.** 나아가 대학운영 위기에 처한 한계대학이 자진하여 폐교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증여세 감면 등 유인책도 고려해볼 만하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소규모 중고 사립학교 폐교촉진 사업 사례는 좋은 시사점을 둔다. 초기에는 국고(지방비) 지원 금액을 잔여재산에서 공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보조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유인책 부족으로 폐교사업에 학교법인의 호응도가 낮아서 국고보조금액 공제를 철회하고 오히려 해산 장려금을 주어서 31개 법인, 36개 학교(유치원1, 중학교 24개, 고등학교 8개, 고등기술학교 3개)를 원만하게 폐교 처리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둘째,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통합이다. 학교에 속하는 회계(학교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법인회계)로 구분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의 제정의 참조가 되었던 일본의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경영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법인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여 회계 간의 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가가 설치한 서울대학교법인에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구분치 않고 회계 단일화를 법률로 보장한 것처럼 회계 통합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법인회계와 학교회계가 통합되면 법정전입금 부담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학교업무에 관련된 법적 타툼 소송비를 교비로 지출하여 횡령죄로 처벌받는 문제도 해소될 것이다.

셋째,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취소 권한을 폐지하고 임원해임권고로 완화한다. 임원취임승인 취소 요건은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관할청의 재량권 남용 일탈 소지 크다. 임원승인취소는 헌법상 보장되는 사학경영자의 학교운영권을 비록 한시적·임시적이지만 박탈하는 것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학혁신방안에서 이사승인취소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관할청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있다. 차제에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임원승인취소제도를 일본이나

대만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관할청의 임원해임 권고로 변경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일본은 관할청에서 사립학교심의회 의견을 들어서 임원해임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넷째, 사학 정책형성 과정에 사학 대표자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토록 한다.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와 관련된 중요 정책이나 제도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 설치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정부 일방으로 사립학교 규제 정책을 생산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가칭“사학제도심의회”을 설치하여 사학 대표자의 참여를 보장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문부성과 도도부현(시도)에 사학관계자 포함된 교육계 인사로 ‘사학심의회’를 설치하여 사립학교 설치·폐지 및 변경 등을 사전 심의토록 하여 사학행정권한의 남용을 통제하고 있다.

다섯째, 사립대학에 재정지원 기준을 법률로 정해서 안정적으로 지원받도록 한다. 시·도교육청의 풍족한 예산 사정에 비해 대학의 살림살이는 형편없다. 사립대학의 74%가 재정적자 상태이고, 정부 부담 GDP 대비 대학교육비 비율도 0.6%에 불과해 OECD 회원국 평균의 1%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 그 결과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초등학생의 90% 수준이다. 초·중·고교는 OECD 평균의 1.3배인데 고등교육은 66%밖에 안 된다. 대학교육비가 초·중등학교 교육비보다 적은 선진국은 없다.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정권에 따라 지원기준이 바뀌고 전 정부에서 만든 사업이 없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재정지원사업을 무기로 등록금을 동결시키거나 입시정책과 연계시키며 구조조정을 강요하기도 한다. 이처럼 재정지원사업이 사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률로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일본의 ‘사립학교진흥조성법’처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립대학은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를 예측할 수 있어 보조금액을 고려하여 중장기 대학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국세 교육세의 고등교육세로 개편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거나,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고등교육 관련 예산을 합산해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일원화한다. 칸막이를 없애서 초·중등교육 재원과 대학교육 재원을 상호 융통하는 방안이다.

여섯째, 국제규범에 맞추어 자사고·외고를 존치시키고 자율을 주어야 한다. 국가권력이 사립학교의 운영을 통제하고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전 세계에 없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 미국, 일본의 사립 중·고등학교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교사채용에서 국가의 간섭 없이 완전한 자율을 누린다. 이런 자율을 바탕으로 교육경쟁력을 키워서 전 세계를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에게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설립하고 운영하는 자유의 보장은 자유민주주의 성숙도의 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일곱 번째, 교육을 산업으로 보고 영리대학 도입을 제안한다. 노무현대통령은 대학교육은 경쟁으로 나가야 하며, 합리적인 통제 하에 합리적인 이윤이 가능하도록 영리법인 허용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2006.2.6.)한 바 있고, 전경련과 경제부처 등에서는 영리법인 대학설립 운영을 허용하자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교육서비스 경쟁력 강화, 유학수지 개선,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및 각종 규제완화 목적으로 영리대학 도입이 주창되었다. 평등주의적 진보세력들은 교육을 서비스 산업으로 보는 것을 극히 경계한다. “시장의 개념”에 따른 교육의 상품화, “경쟁의 논리”에 의한 사회적 소모성, 이기주의에 의한 공동체의 해체, 그리하여 결국 공교육제도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리대학 도입이 우리나라 고등교육 생태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기업·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력 미스매치(mismatch)해소에 도움되고, 미네르바 대학처럼 기존의 대학을 뛰어 넘는 혁신창조형 대학이 나타나며, 기업경영기법의 도입으로 대학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영리법인의 학교인수·설립 허용으로 대학구조조정 활성화되고, 기존 비영리 대학에 대한 설립·운영상의 규제가 철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토론문

공교육에 바우처 도입하자¹⁾

김정호(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공교육은 소비자 선택의 암흑지대다. 정부가 정하는 학교에 가야 하고, 정부가 정한 내용을 배워야 한다. 학생과 부모가 무엇을 원하든 상관 없다. 그러다 보니 교육이 재미 없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잠만 잔다. 교실 붕괴, 교육 붕괴는 소비자 선택에 봉쇄되어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이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교육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가 그 선택을 받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학부모들이 자기부담을 해야 하는 데도 사립초등학교, 사립유치원을 공립보다 더 선호한다는 사실은 선택권의 결과가 어떤지를 잘 보여준다. 2022년 사립초등학교 입학 경쟁률은 11.7대 1이다. 매월 100만원 가까운 부담을 각오하면서 사립을 선택한 학부모들이 그렇게 많다. 코로나 대응, 영어교육, 컴퓨터 교육 등 여러 면에서 사립이 공립보다 낫기 때문이다.

유치원도 상황이 비슷하다. 서울지역의 사립유치원 충원율은 85%인데 공립은 76%이다. 경기 지역은 사립 86%, 공립 71% 이다.²⁾ 사립에 보내려면 매월 20만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는데도 사립을 더 많이 보낸다.

사립이 교육비를 많이 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틀렸다. 1인당 교육비는 사립이 공립보다 더 싸다. 공립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학생1인당 교육비는 1092만원인데, 사립은 1019만원이다. 공립유치원은 1368만원, 사립유치원은 636만원이다. 공립고등학교 1396만원, 자립형 사립고(전국단위) 1192만원이다. 귀족 학교라는 손가락질 받는 자사고가 공립고등학교 보다 1인당 204만원을 덜 쓴다.³⁾ 공립의 비용은 납세자들 부담이어서 누구도 비용이라고 느끼지 못하지만 사립은 부담을 학부모가 직접 느끼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났다.

<그림> 각급 학교별 학생 1인당 교육비와 부모 부담금 비율(2018 년)



교육과 비용 모두에서 사립이 더 나은 이유는 절박함에 있다. 사립은 학부모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예산 확보가 안된다. 자칫하면 학교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립은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절박할 수 밖에 없다. 반면 공립은 학생이 자동 배정되는 데다가 예산 또한 성과와 무관하게

1) 필자의 줄고, '한국의 무상교육, 바우처 방식으로 바꾸자',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2022를 수정 보완한 내용.

2) 간정혁, 수혜자 중심의 경기 유아교육, 2022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2022.

3) 일반고는 대부분 기숙사가 없지만 전국단위자사고는 대부분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한다. 표 속의 1192만원은 전국단위자사고 학비에서 기숙사비 400만원을 제한 금액이다.

학교로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절박할 이유가 없다. 예산을 절약할 이유도, 학생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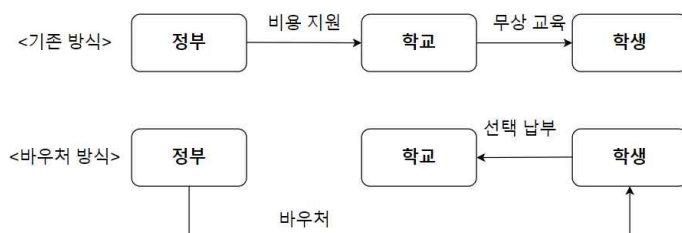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상교육을 하면서도 사립의 특성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 교육예산을 학부모들에게 나눠주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면 된다. 소위 바우처 방식이다. 스웨덴의 모든 학교, 영국의 아카데미 스쿨, 미국의 차터스쿨 등 바우처로 운영되는 학교는 재정적으로는 공립이면서 학교 운영은 사립과 동일하게 자유를 누린다. 우리도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바우처 제도는 두가지 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축은 재정인데 방법은 간단하다. 전체 교육 예산을 유아, 초등, 중등교육별로 배분한 후, 학생수로 나눠서 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한다. 1인당 금액을 학생수에 따라 정부가 직접 매월 학교에 지급해 줘도 마찬가지다. 공사립 모두 학생 1인당 금액은 같아야 한다. 공립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사립학교보다 이미 더 많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두번째 차원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다. 학교가 학생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절박하게 노력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그러자면 학군제에 의한 학생 강제 배정 방식을 폐기해야 한다. 사립이든 공립이든 학생이 관내의 어떤 학교라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학교 서열화가 걱정된다면 스웨덴에서처럼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 차원은 학교의 자유와 책임이다. 학생이 바우처로 공사립 구분 없이 선택을 하듯이 학교들이 공사립 구분 없이 자유롭게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 집행에서도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는 적자가 나겠지만 스스로 책임지게 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는 폐교도 감수해야 한다. 공사립 가리지 말고 이렇게 해야 늘어나는 교육재정이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기존 교육재정 집행 방식과 바우처 방식 비교



수십년에 걸친 교육 개혁, 공무원과 시민단체, 교사에 의한 교육 개혁은 대부분 실패했다. 이제 학부모와 학생이 주도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스쿨 바우처다. 학생이 오지 않으면 공립학교도 문을 닫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바우처 제도는 지금까지의 어떤 개혁보다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주도하는 바우처 제도로 대한민국의 교육이 환골탈태하길 바란다.

토론문

한국 대학의 위기와 국가경쟁력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동원

발제문의 내용중 상당부분에 동의한다. 본 토론문은 발표문에 대한 반론이기보다는 보완적인 성격을 가진 글로서 사립대학의 재정난과 국가경쟁력에 초점을 두었다.

한국 대학의 위기가 심각하다. 전국 사립대학 중 72%인 85곳이 2020년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 사립대학의 적자 규모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19년 2,727억원에서 2020년 4,200억원으로 1년 사이 54%나 증가했다. 지방소재 대학의 도산은 여러해 전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서울소재 대규모 대학의 파산 소식도 들리고 있다.

한국 대학의 위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960년 신생아 109만명이 태어났지만 2020년에는 불과 27만명에 그쳤다. 신생아 숫자는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2021학년도 수능응시자는 약 42만 여명으로 55만여 명인 대입 정원을 밑돈다. 응시자와 대입 정원 간 괴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둘째, 대학의 변화가 더디다. SNS와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지식대중화 시대에 지식의 산실로서의 대학의 위상은 갈수록 낮아지지만, 대학은 지식을 독점하던 상아탑 시대의 관습에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대중은 대학을 서서히 외면하게 되어 대학진학에 대한 욕구가 식어가고 있다.

셋째, 기업과의 경쟁이다. 기업은 빠르게 변하는 세계에 맞춘 새로운 지식을 상품으로 교육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세계 테크기업의 주요 사업은 교육이며, 대학의 가장 큰 경쟁자는 구글, 애플, 네이버, 삼성, SK 등이 되었다. 미국의 에듀테크 스타트업은 2019년 105건 17억 달러에서 2020년 130건 22억 달러로 1년에 30%씩 급증하고 있다. 세계 온라인 학습시장도 연평균 21%씩 성장 중이다.

넷째, 수년간 지구를 강타한 COVID-19는 대학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휴학생이 급증하고 외국 유학생과 서머스쿨, 윈터스쿨, 최고위과정 등의 수강생이 급감해 수입은 줄었지만 비대면 학습기재와 격리시설 마련 등 방역비용이 늘어 적자폭이 커지게 됐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립대학 등록금은 2009년 이후 14년간 동결됐다. 물가상승을 감안한다면 실질 등록금은 22% 낮아진 것이다. 한국 대학이 연구에 투자할 재정 역량이 약해지면서 국제경쟁력은 하락했다. THE, QS, 상하이 자오퉁대학,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등의 대학평가에서 수년간 한국 대학들은 퇴보를 면치 못했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지만 한국의 대학들은 대부분 세계 100위를 밑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먼저 대학 스스로 변해야 한다. 대학은 사회수요에 맞는 교과과정을 적극 개발해 사회가 스스로 대학을 찾아오게 해야 한다. 재정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등록금 수입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기업과 대학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산학협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각 단위조직별 수익과 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재무회계시스템을 구축해 행정효율화를 도모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30대 이상 인구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학위·비학위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를 쓰는 전 세계 모든 한인 인구를 대상으로 온라인교육을 확대하고, 한류 바람을

이용해 우수 외국인 학생을 대폭 유치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교원과 학생의 창업을 유도해 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해 수입을 확충해야 한다.

한국 사립대학의 연간 등록금 평균은 8,582달러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미국 사립대학 평균 31,875달러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OECD국가는 평균적으로 대학재정의 70%는 정부가, 30%는 민간이 부담한다. 반면 한국은 정부가 20%, 민간이 80%를 책임지는 구조다. 현 상태를 방치하면 교육부실화로 이어져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이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는 사학경영자를 일부 사학의 파행을 전체 사학의 문제로 취급하여 모두를 부도덕한 존재로 보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대학 재정을 지원하거나, 대학이 등록금 등 수입증대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숨통을 터줘야 한다.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립대학이 학생부족이나 재정난으로 폐교하는 경우잔여 재산의 일부라도 설립자등에게 귀속하도록 하여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의 퇴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도우는 법안이 11개이상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잔여재산의 처리에 대한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하여 형편이 어려운 사립대학의 퇴로를 가로막고 있다.

한국은 인적자원이 경쟁력인 국가이다. 한국 대학의 위기는 국가 경쟁력의 위기이다. 후진적인 대학을 가진 선진국은 상상하기 어렵다. 한국 대학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